

제2025-28호 2025년 4월 8일(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조 례

○ 여수시 조례	제2182호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	1
○ 여수시 조례	제2183호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여수시 조례	제2184호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8
○ 여수시 조례	제2185호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	15
○ 여수시 조례	제2186호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
○ 여수시 조례	제2187호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	26
○ 여수시 조례	제2188호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 여수시 조례	제2189호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2
○ 여수시 조례	제2190호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규 칙

○ 여수시 규칙	제855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41
○ 여수시 규칙	제856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3
○ 여수시 규칙	제857호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8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182호

붙임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 1부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 시책”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3. 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시책 만족도, 인지도, 시책 및 사업 평가, 현안 인식, 제안 및 개선의견 수집 등 단순한 의견조사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각종 시책에 대하여 필요시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2025/11/10



여수시 조례 제2183호

붙임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83호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 본문 중 “제21조에”를 “제20조에”로 한다

제15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회의 등)

⑦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및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1조</u> 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를 위반하였을 때	4. <u>제20조</u> ----- -----
제15조(회의 등) ① ~ ⑥ (생 략)	제15조(회의 등) ① ~ ⑥(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⑦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및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특 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 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u>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2021 MB 인



여수시 조례 제2184호

붙임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 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자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

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인공지능
사회 구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2025/11/10



여수시 조례 제2185호

붙임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 1부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3.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인공지능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5.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
6.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

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8.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9.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10.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 및 영향받는 자가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행정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차별 발생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공지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및 행정서비스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영양받는 자,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전 시민 대상 인공지능윤리 교육 사항
 5. 인공지능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활용 정책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 및 제안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인공지능 정책 관계 부서 국장 및 업무 담당 과장
 - 2.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 3. 인공지능사업자
 - 4. 이용자
 - 5.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 6.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내외(정부, 지방자치단

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구매 노력 등)** ① 시장은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 활용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활용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이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검·인증 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제공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2025.4.8



여수시 조례 제2186호

붙임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문화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시설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정관) 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이나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여수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및 재단 정관에 따라 임원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재단을 대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16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제9조(여수문화재단설립임원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재단 임원 구성을 위해 여수문화재단 설립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지방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시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하며,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추천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준비) ① 시장은 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 설립을 위한 정관 등 제 규정 마련, 설립허가·등기 및 직원 채용 등 준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한 재단 설립 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봉사
지도원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정기영



여수시 조례 제2187호

붙임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여수시 (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위촉)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별 1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기간)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임무)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2. 시에서 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4. 기타 지역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해촉)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활동지원)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 요령
2. 노인 권리 및 보호 정책
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정책
4. 기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해양낚시
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김기현 인



여수시 조례 제2188호

붙임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88호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중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단체)대표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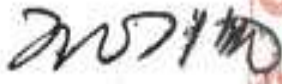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③(생략) 【별지 서식】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③(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 <table><tr><td rowspan="3">신청 법인 또는 단체</td><td>법 인 명 (단 체 명)</td><td rowspan="2">대 표 자</td><td rowspan="2">법 등록번호</td><td rowspan="2"></td></tr><tr><td>소 재 지</td><td>전 화</td></tr><tr><td>법인(단체) 설립일자</td><td>수익 재산 및 이익</td><td></td></tr><tr><td rowspan="2">운영 계획</td><td>주요 사업</td><td colspan="3"></td></tr><tr><td>운영 비 확 보 방 안</td><td colspan="3"></td></tr><tr><td colspan="5">수탁 사유</td></tr><tr><td colspan="5">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 </td></tr><tr><td colspan="5">※ 첨부서류</td></tr><tr><td colspan="5"> 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 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td></tr></table>	신청 법인 또는 단체	법 인 명 (단 체 명)	대 표 자	법 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법인(단체) 설립일자	수익 재산 및 이익		운영 계획	주요 사업				운영 비 확 보 방 안				수탁 사유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 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 <table><tr><td rowspan="3">신청 법인 또는 단체</td><td>법 인 명 (단 체 명)</td><td rowspan="2">대 표 자</td><td rowspan="2">법 등록번호</td><td rowspan="2"></td></tr><tr><td>소 재 지</td><td>전 화</td></tr><tr><td>법인(단체) 설립일자</td><td>수익 재산 및 이익</td><td></td></tr><tr><td rowspan="2">운영 계획</td><td>주요 사업</td><td colspan="3"></td></tr><tr><td>운영 비 확 보 방 안</td><td colspan="3"></td></tr><tr><td colspan="5">수탁 사유</td></tr><tr><td colspan="5">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 </td></tr><tr><td colspan="5">※ 첨부서류</td></tr><tr><td colspan="5"> 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단체)대표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 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td></tr></table>	신청 법인 또는 단체	법 인 명 (단 체 명)	대 표 자	법 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법인(단체) 설립일자	수익 재산 및 이익		운영 계획	주요 사업				운영 비 확 보 방 안				수탁 사유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단체)대표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 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신청 법인 또는 단체		법 인 명 (단 체 명)				대 표 자	법 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법인(단체) 설립일자	수익 재산 및 이익																																																																													
운영 계획	주요 사업																																																																														
	운영 비 확 보 방 안																																																																														
수탁 사유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 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신청 법인 또는 단체	법 인 명 (단 체 명)	대 표 자	법 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법인(단체) 설립일자	수익 재산 및 이익																																																																													
운영 계획	주요 사업																																																																														
	운영 비 확 보 방 안																																																																														
수탁 사유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의 경우 규약 및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2.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단체)대표자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3.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4. 서약서 5. 법인(단체) 현황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 4 월 . 8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189호

붙임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 “농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여수시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및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2. 지역의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가공·판매
3.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및 정비
4.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5. 농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
6. 농촌체험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190호

붙임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공공단체”로 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사무감사) ① 시장은 학교급식 공급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경우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학교급식 공급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자에게 사무를 다시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시장은 필요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u>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관</u> 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④ (생략) <u><신설></u>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공공단체 등-----.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무감사) ① 시장은 학교급식 공급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u>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경우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
<u><신 설></u>	<u>제13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학교 급식 공급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4조(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자에게 사무를 다시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
<u>제12조 (생 략)</u>	<u>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u>

2025년 제4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7.05/1120 인



여수시 규칙 제855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55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12.31., 2009.3.16., 2009.6.8., 2009.10.30., 2009.12.31., 2010.3.12., 2010.12.1., 2011.1.17., 2011.9.23., 2011.12.31., 2012.8.10., 2013.1.10., 2013.8.14., 2014.1.13., 2014.2.21., 2014.6.30., 2015.1.15., 2015.6.5., 2016.2.1., 2016.4.22., 2016.8.1., 2016.12.30., 2017.7.3., 2017.12.29., 2018.8.1., 2019.1.2., 2020.1.2., 2020.7.10., 2020.10.12., 2021.1.4., 2021.4.26., 2022.1.3., 2022.7.7., 2022.12.30., 2023.12.29., 2024. 7. 3.)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총 계		1,936	1,107	45	220	91	17	31	129	296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1,887	1,095	45	183	91	17	31	129	296
3 급		1	1							
4 급		13	9	1	2	1				
5 급		86	46	3	6	3	1	1	6	20
6 급		441	274	11	46	16	4	8	37	45
7 급		484	289	24	45	22	5	6	25	68
8 급		512	277	5	62	27	5	9	31	96
9 급		349	198	1	22	22	2	7	30	67
전문경력관(나군)계		1	1							
화 생 방 관 리 원		1	1							
별 정 직 계		2	2							
비 서 요 원 (6 급 상 당)		1	1							
비 서 요 원 (7 급 상 당)		1	1							
면 구 직 계		12	9		3					
학 예 면 구 사		7	7							
기 록 면 구 사		1	1							
농 업 면 구 사		3			3					
해 양 수 산 면 구 사		1	1							
지 도 직 계		34			34					
농 촌 지 도 관		2			2					
농 촌 지 도 사		32			32					

* 일반직과 별정·연구·지도직에 (복수표) 해당된 공원을 포함

1 페이지

[별표 2] (개정 2008.12.31., 2009.3.16., 2009.6.8., 2009.10.30., 2009.12.31., 2010.3.12., 2010.12.1., 2011.1.17., 2011.9.23., 2011.12.31., 2012.8.10., 2013.1.10., 2013.8.14., 2014.1.13., 2014.2.21., 2014.6.30., 2015.1.15., 2015.6.5., 2016.2.1., 2016.4.22., 2016.8.1., 2016.12.30., 2017.7.3., 2017.12.29., 2018.8.1., 2019.1.2., 2020.1.2., 2020.7.10., 2020.10.12., 2021.1.4., 2021.4.26., 2022.1.3., 2022.7.7., 2022.12.30., 2023.12.29. 2024. 7. 3., 2024. 12. 27.)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총 계	1,936	1,107	45	220	91	17	31	129	296
정무직계	1	1							
시장	1	1							
일반직계	1,887	1,095	45	183	91	17	31	129	296
3급 계	1	1							
행정	1	1							
4급 계	13	9	1	2	1				
행정	6	5	1						
기술	2	1		1					
행정+기술	4	3							
행정+기술+농촌지도	1			1					
5급 계	86	46	3	6	3	1	1	6	20
행정	17	14	2		1				
해양수산	1	1							
시설	3	3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시설	9	8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공업+환경	3	3							

행정+사무운영	5	4			1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3	3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4	3			1			
공업+화공운영	1	1						
녹지+시설	2	2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3			3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환경	1	1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서+위생	1	1						
행정+사서+기록연구사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공업+방송통신	3	3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3				
행정+녹지+시설	5	5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총 계	1,936	1,107	45	220	91	17	31	129	296
행정+의로기술+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의로기술+간호+보건진료	1			1					
6급 계	441	274	11	46	16	4	8	37	45
행정	67	59	5		2	1			
세무	7	7							
사회복지	6	6							
공업	1	1							
해양수산	6	6							
보건진료	6			6					
환경	3	3							
시설	24	20			1	3			
운전	6	6							
기계운영	1				1				
행정+세무	11	11							
행정+전산	5	5							
행정+사회복지	16	16							
행정+사서	7	7							
행정+공업	6	6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3	3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환경	10	10							
행정+시설	23	23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행정+보건+식품위생	3	1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2	2							
세무+전산+시설관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5	2			3				
공업+시설+시설관리	1	1							
전산+공업+방송통신	1	1							
농업+녹지+시설	2	2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공업+환경+시설	2				2				
농업+수위+농촌지도	2			2					
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9			9					
보건+간호+보건진료	5			5					
행정+세무+전산+사회복지	14						2	6	6
행정+세무+전산+농업	4						1	3	

행정+세무+전산+해양수산	1						1	
행정+세무+전산+식품위생	1						1	
행정+세무+전산+방송통신	3						3	
행정+세무+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세무+보건+간호	1						1	
행정+전산+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사서+기록면구사	1	1						
행정+전산+공업+보건	1						1	
행정+전산+공업+시설	5	5						
행정+전산+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시설+해양수산+사무운영	3		3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공업+간호	4						1	3
행정+사회복지+공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3	2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30					1	6	23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사서+공업+환경	1	1						
행정+사서+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농업+복지	1						1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2						2	
행정+공업+복지+해양수산	1							1
행정+공업+복지+시설	6	1				1	4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공업+시설+학예연구사	2	2						
행정+공업+방재안전+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복지+시설	2						2	
행정+농업+복지+농촌지도	1			1				
행정+농업+수업+농촌지도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3					1	2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해양수산+복지+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식품위생+의료기술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보건+환경+시설	1							1	
전산+공업+시설+방송통신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간호+환경	1	1							
공업+보건+시설+방재안전	1	1							
7급 계	484	289	24	45	22	5	6	25	68
행정	117	62	18		2	1	2	5	27
세무	6	6							
전산	5	5							
사회복지	39	16						5	18
사서	1	1							
공업	14	11			3				
해양수산	11	11							
환경	6	6							
시설	40	31		1	3	4	1		
방재안전	1	1							
운전	15	10	2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보건진료	5			5					
위생	-								

간호조무	1		1					
전기운영	-							
기계운영	-							
행정+세무	21	18					2	1
행정+전산	5	5						
행정+사회복지	25	9					1	15
행정+사서	7	7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0	1	1				5	3
행정+녹지	5	4				1		
행정+해양수산	8	5				1	2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16	16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3	1	1	1				
공업+방송통신	1	1						
공업+시설관리	2			2				
공업+전기운영	2	2						
공업+기계운영	1			1				
농업+녹지	2	2						
농업+수위	1		1					

농업+해양수산	1						1	
농업+농촌지도	2			2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보건진료	1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1				
간호+보건진료	1			1				
방재안전+시설관리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사서	1					1		
행정+세무+해양수산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사회복지+사무운영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사서+학예연구사	2	2						
행정+사서+기록연구사	2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9	7			2			
행정+농업+해양수산	-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행정+보건+간호	-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	-								
전산+공업+방송통신	1	1							
전산+농업+녹지	1	1							
사회복지+공업+시설	1	1							
공업+녹지+시설	5	5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방재안전	2	2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시설+방송통신	1	1							
공업+시설+시설관리	1							1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수목+농촌지도	2			2					
보건+식품위생+간호	1			1					
보건+식품위생+보건진료	1			1					
보건+식품위생+시설	1			1					
보건+식품위생+위생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행정+세무+공업+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사무운영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4	2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3	1			2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식품위생+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1
공업+보건+간호+시설	1	1							
공업+보건+간호+방재안전	1	1							
공업+환경+시설+시설관리	1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식품위생+간호+시설	1	1							
8급 계	512	277	5	62	27	5	9	31	96
행정	79	54	3		2	2			18
전산	1	1							
사회복지	38	13					1	3	21
공업	4	4							
농업	1							1	
해양수산	5	5							
보건	4			4					
의료기술	4			4					
간호	14			6			1	5	2
보건진료	9			9					
환경	4	4							
시설	19	16				3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							
운전	13	7		4	2			
통신운영	-							
기계운영	-							
행정+세무	22	19			2		1	
행정+전산	7	6			1			
행정+사회복지	27	5				1	5	16
행정+사서	9	8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6					3	2	1
행정+녹지	3	1					1	1
행정+해양수산	10	7					2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6	15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무운영	1	1						
전산+시설	1	1						
전산+공업	1	1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간호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5	4		1			
공업+방재안전	1	1					
공업+방송통신	1	1					
공업+기계운영	1				1		
농업+녹지	2	2					
농업+해양수산	1						1
농업+농촌지도	5			5			
해양수산+환경	1	1					
시설+토목운영	2	2					
방송통신+통신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간호	15			6			9
보건+보건진료	2			2			
식품위생+위생	1					1	
의료기술+간호	9						9
간호+보건진료	1			1			
방재안전+시설관리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재안전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5	3	2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사서+학예연구사	4	4						
행정+사서+기록연구사	2	2						
행정+공업+환경	5	5						
행정+공업+시설	39	28			7			4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행정+해양수산+환경	5	5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식품위생	-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전산+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공업+녹지+시설	4	4						
공업+환경+시설	7	3			4			
공업+환경+방재안전	1	1						
공업+시설+시설관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2	1			1			
농업+수목+농촌지도	1			1				
농업+농업면구사+농촌지도사	-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보건+간호+보건진료	3			3				

행정+세무+전산+사서	1							1	
행정+세무+사회복지+공업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4						2		12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전산+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농업+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식품위생+위생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2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전산+공업+시설+방송통신	2	2							
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간호	4							2	2
공업+보건+간호+환경	3	3							
공업+환경+시설+기계운영	1				1				
농업+녹지+해양수산+시설	2	2							
농업+식품위생+간호+농촌지도	1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4	3						1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1					
9급 계	349	198	1	22	22	2	7	30	67
행정	43	31				1	1		10
사회복지	33	5					1	5	22
사서	1	1							

공업	1	1						
농업	-							
녹지	1	1						
해양수산	8	8						
보건	-							
식품위생	-							
환경	1	1						
시설	12	11				1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운전	14	8		2			1	3
토목운영	-							
기계운영	-							
행정+세무	18	15						3
행정+전산	-							
행정+사회복지	36	9					1	10
행정+사서	13	11						2
행정+공업	6	6						
행정+농업	6	1		3			1	1
행정+녹지	4	4						
행정+해양수산	6	6						
행정+식품위생	-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3	13						

행정+사무운영	8	4					1	3
전산+사서	1	1						
전산+방송통신	-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							
공업+방재안전	1	1						
공업+기계운영	4	3			1			
공업+시설관리	2				2			
공업+전기운영	1				1			
농업+보건	1			1				
농업+식품위생	-							
보건+의료기술	10			9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1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토목운영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해양수산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6	4	1		1			
행정+사회복지+사서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사회복지+사무운영	1	1						
행정+사서+사무운영	1	1						

행정+공업+녹지	1	1						
행정+공업+환경	6	6						
행정+공업+시설	27	20			6		1	
행정+공업+방재안전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식품위생+의료기술	1			1				
전산+공업+방송통신	1	1						
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	2						1	1
공업+환경+시설	7				7			
공업+환경+방재안전	4	4						
공업+환경+기계운영	1	1						
공업+시설+방송통신	1	1						
공업+시설+시설관리	-							
농업+식품위생+위생	2			2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환경	1			1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2	1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2						1	1
사회복지+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7							7

공업+녹지+시설+기계운영	1	1							
공업+환경+시설+시설관리	1				1				
공업+환경+시설+기계운영	1				1				
농업+녹지+해양수산+시설	1	1							
농업+식품위생+간호+농촌지도	-								
전문경력관(나군)계	1	1							
화생방관리원	1	1							
별정직계	2	2							
비서요원(6급상당)	1	1							
비서요원(7급상당)	1	1							
연구직계	12	9		3					
학예연구사	7	7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3			3					
해양수산연구사	1	1							
지도직계	34			34					
농촌지도관	2			2					
농촌지도사	32			32					

2025년 제4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2025/4/8



여수시 규칙 제856호

붙임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섬발전지원과장”을 “섬발전지원과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과장”을 “주차차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3항”을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읍 · 면 · 동장의 직급(제21조 관련)

읍·면·동	직 위	직 급
돌산읍	돌산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소라면	소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울촌면	울촌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화양면	화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남면	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화정면	화정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삼산면	삼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동문동	동문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한려동	한려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중앙동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충무동	충무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광림동	광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서강동	서강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대교동	대교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국동	국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월호동	월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여서동	여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문수동	문수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미평동	미평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둔덕동	둔덕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만덕동	만덕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쌍봉동	쌍봉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시전동	시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여천동	여천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주삼동	주삼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삼일동	삼일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묘도동	묘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장을,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청년인구정책관은 부시장을, <u>관·과장은 국·소·단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2조(직무) ----- ----- ----- <u>과장</u> ----- ----- -----.
제9조(해양수산국) ① (생 략) ② 해양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수산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어업생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u>섬발전지원과장</u>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해양수산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섬발전지원과장은</u> ----- ----- -----.
제12조(교통도로국) ① (생 략) ② 교통과장·주차차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u>도로과장은</u>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제12조(교통도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주차차량과장은 지</u> ----- <u>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u>

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 ③ (생략) ④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과 같다.	·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 -----. 제15조(하부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 ----- -----.
---	--

2025년 제4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2025/4/8



여수시 규칙 제857호

붙임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봉투 공급 수불부를”을 “관리대장을”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장은 「<u>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u>」(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 3. (생략) 제9조(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 <u>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봉투 공급 수불부를</u> 비치·관리해야 한다.	<u>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 「<u>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u>」----- ----- ----- -----. 제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 「<u>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u>」----- ----- -----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등 비치) ----- ----- <u>관리대장을</u> ----- ----- -----.